

## 2.22(금)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4% 인상

문의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02-2110-4894)

-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2월 22(금)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밝혔

〈2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서울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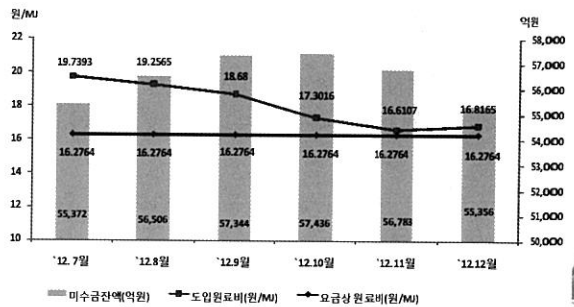
(단위 : 원/MJ, VAT 별도)

구분	현행(A)	변경(B)	증감(B-A)
평균	19.6607	20.5173	0.8566 (4.4%)
주택용(난방용)	20.0750	20.9316	0.8566 (4.3%)
주택용(취사용)	19.9498	20.8064	0.8566 (4.3%)
산업용	18.7292	19.5858	0.8566 (4.6%)
일반용(영업용1)	20.9669	21.8235	0.8566 (4.1%)
일반용(영업용2)	19.9652	20.8218	0.8566 (4.3%)

\* 산업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원료비 연동제에 복귀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음

〈'12년 하반기 도입원료비 및 요금상 원료비 추이〉



-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임

※ 도입 원료비(원/MJ) :

( '12.7)19.7393 → ( '12.10)17.3016 → ( '12.12)16.8165

※ 요금상 원료비(원/MJ) :

( '12.7)16.2764 → ( '12.10)16.2764 → ( '12.12)16.2764

- 그간 요금동결로 천연가스 도입원료비가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해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 가스공사 미수금 : ( '11년말) 4.4조원 → ( '12년말) 5.5조원

※ 가스공사 부채비율(별도기준) : ( '07) 228% → ( '11)

364% → ( '12e)394%

- 향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 금번 요금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월 하순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하였으며, 가구당 2월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약 1,127원/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구당 2월 평균 요금(VAT포함) : (조정전)

105,565원 → (조정후) 106,692원

※ '12년 2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 111m<sup>3</sup>

(= 4,784MJ) 기준



## 해빙기맞아 안전시설 불량한 건설현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 25일(월)부터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 감독 시작

문의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02-6922-0951)

작년 2월18일, 강원도 평창에서 포크레인으로 비탈면 깎기 작업을 하던 중 돌덩어리 2개가 떨어져 흙막이 시설이 뚫어지면서 작업중이던 근로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25일(월)부터 3월15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날씨가 풀리면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 자재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특히, 겨우내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거나 안전시설을 방치하여 추락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건설현장중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굴착공사, 대형교량 및 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이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흙막이 시설, 거푸집 동바리 등에 대한 붕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비계에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입건)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해빙기 감독기간중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를 집중점검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사법조치하고,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형광등이제 LED로 켜다

기존 형광램프를  
대체하는 LED램프 안전인증 실시

문의 |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02-509-7245)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기존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형광등기구(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에는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기존의 전용 형광등을 꽂아야만 하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LED램프를 꽂을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안정기를 제거하고 컨버터(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LED를 구동하는 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만 생산·판매를 허용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형광등기구에 바로 LED램프를 꽂아 쓸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호환형)에 대해서도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지난 2.25일자로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3개월의 시험인증 기간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고효율의 LED램프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기존 형광등기구에서 형광등을 직접 대체 사용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국제표준\*에 서도 논의 중이며, '14년 경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 \* IEC 국제표준은 현재 위원회 초안(CDV) 상태로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임
  - 이미 일부 국내 업체들은 안전기준을 강제하지 않는 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국내 판매도 가능함에 따라 LED조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기술력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기술표준원은 램프 베이스가 한쪽에만 있는 단일캡 형광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램프(U자형)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인을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름다운 명언

- 교황 요한 23세 -

Consult not your fears,  
but your hopes and your dreams.  
Think not about your frustrations,  
but about your unfulfilled potential.  
Concern yourself not with what  
you have tried and failed in,  
but for what is still possible for you to do.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꿈의 조언을 구하라.  
좌절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채워지지 않은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여전히 가능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